

KIS-25-20		가정통신문	(주소) 55 Lei King Road, Sai Wan Ho, Hong Kong
2025. 3. 18.			(연락처) Tel: (852) 2569 5500 Fax: (852) 2560 5699 (홈페이지) http://ks.kis.edu.hk

2025학년도 1학기 중등부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홍콩한국국제학교는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18일(화) 7-8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중등부 전체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사례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이자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가정 내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가.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나. 유형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속칭 뺑 서툼, 와이파이 서툼,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 등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2. 학교폭력 처벌 유형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 4호. 사회봉사: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6호. 출석정지: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 특히,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
- 8호. 전학: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 9호. 퇴학처분: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유의 사항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특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학급교체(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담임교사 또는 본교 학교폭력 담당교사(smham@kis.edu.hk)

2025. 3. 18.